

대구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가단1486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

피고D

변론 종결2021. 7. 15.

판결 선고2021. 9.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인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의 대출약정 체결 및 B의 연대보증

1)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5. 6. 30.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에게 7억 4,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F의 사내이사 B은 F의 위 대출금채무를 한도액 7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근보증하였다.

2) E은행은 2016. 10. 12.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F와 B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소외 G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만 한다)는 2018. 4. 17. G 유한회사와의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3) A는 F와 B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288884)를 제기하여 2018. 11. 14. 'F와 B은 연대하여 139,813,096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18.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B은 7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행위

1) B 소유의 대구 수성고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6. 11. 18. 경매대금 165,789,000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2) 한편, B은 피고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피고 스스로도 2021. 5. 18.자 답변서에서 위 계좌를 B이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피고의 경락잔금 납부일인 2016. 11. 18. 이 사건 계좌에서 19,98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경락대금으로 납입하였다(이하 B이 피고에게 위 19,980,000원을 이체한 행위를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다. B의 재산상황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B은 A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약 7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

A는 2020. 2.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 B은 대구지방법원

2020하단698호로 파산을 신청하여 2020. 9. 21.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정되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부인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B이 거주할 목적으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하기 위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기 이전인 2015. 7. 및 2015. 9.경 B에게 5,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은 것으로, B에게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로 여전히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하거나 다른 파산채권자의 만족을 저하시킨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므로(위 2014다1813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선의 항변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될 정도로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효선